

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FAQ

1 사업지원 유형

○ 사업 지원 유형별 차이점(양산성능평가 vs. 양산성능개선)

- ☞ 양산성능평가는 수요기업의 양산라인에 직접 실장하고 성능검증을 통해 양산이 가능한지 판단
- ☞ 양산성능개선은 기술개발은 완료되었으나, 양산 성능검증이 미비하다고 판단되어, 추가적인 R&D/신뢰성 확보/공법 개발 등을 추진
- ☞ 양산성능개선의 경우, 추가활동을 양산성능평가 전·후에 구성하는 것은 신청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됨

○ 사업 지원 유형을 복수로 신청 가능한지 여부

- ☞ 양산성능평가 및 양산성능개선은 한 개의 과제에 복합적으로 신청할 수는 없음(즉, 과제 신청시 유형은 택1하여 신청 필요)
 - 기술개발 완성도 및 양산화 단계에 대한 부분은 신청기관에서 가장 정확히 알 수 있기에, 신청 유형에 대한 타겟팅이 필요

○ 품목 vs. 과제

- ☞ 품목과 과제는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, 2개 이상의 품목을 1개의 과제로 신청이 가능(과제 개수와 사업계획서 개수는 동일)
 - 양산성능평가유형 및 양산성능개선유형은 다품목을 신청 및 지원할 수 있음
 - 또한, 2개 이상의 품목을 개별과제로 신청도 가능(예를 들어, 동일기업이 총 2개의 과제를 신청시, A과제에는 2개의 품목을, B과제는 3개의 품목을 신청할 수 있음) (단, 모든 과제가 선정되는 것은 담보되지 않음)

2 과제 및 기관·기업의 구성

○ 수요기업 없이 공급기업만으로 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

- ☞ 공급기업만으로 사업을 신청시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으나, 사업의 목적 및 취지 고려가 필요
- 동 사업은 '수요기업-공급기업' 간 상생협력을 통한 양산성 확보 등 국내 공급망 확보를 사업의 목적 및 취지로 하고 있음
- 다만, 공급기업만으로 사업을 구성하는 경우, 구비서류 중 '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'(구비서류 3번)는 필수로 제출해야 함

○ 동일 품목이나, 용량 또는 스펙 등이 상이한 경우, 품목을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

- ☞ 개별 과제로 신청이 가능하며, 한 개의 과제로 신청도 가능함
- ☞ 추후,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여부가 정해질 예정으로,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·기업의 판단으로 유리한 방법으로 신청
- ☞ 또한, 신청기관은 과제 또는 품목의 중복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

○ 과제 선정 후 수요기업을 매칭하여 양산성능평가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

- ☞ 동 사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점에 과제의 참여주체 및 수행 내용 등을 신청기관이 모두 구성하여 시작하는 것임
- 즉, 과제 선정 후 수행기관을 사후적으로 변경 또는 추가 하는데 제약이 있음(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7조 참조)

3 사업비

○ 정부출연금 대비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

- ☞ 총사업비는 국비(정부출연금) 및 민간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며, 공고문에 제시된 품목당 2억원 또는 5억원은 ‘국비’ 기준 지원임
- ☞ 수행기관(총괄/세부/주관/공동기관 등)의 유형 및 기업의 규모에 따라,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의 발생 및 금액이 상이

예시-1	유형	국비	민간부담금	민간-현금
총괄주관	비영리	1억	(의무없음)	(의무없음)
세부주관	영리-대기업(수요기업)	2억	(예외-의무없음)	(예외-의무없음)
공동기관	영리-중소기업	2억	50백만원 ↑	5백만원 ↑
합계		5억	50백만원 ↑	5백만원 ↑

예시-2	유형	국비	민간부담금	민간-현금
총괄주관	비영리	1억	(의무없음)	(의무없음)
세부주관	영리-대기업	2억	약1.33억 ↑	약26백만원 ↑
공동기관	영리-중소기업	2억	5천만원 ↑	5백만원 ↑
합계		5억	약1.83억 ↑	약31백만원 ↑

예시-3	유형	국비	민간부담금	민간-현금
주관	영리-중소기업(수요기업)	1억	(예외-의무없음)	(예외-의무없음)
공동기관1	비영리	2억	(의무없음)	(의무없음)
공동기관2	영리-중소기업	2억	50백만원 ↑	5백만원 ↑
합계		5억	50백만원 ↑	5백만원 ↑

예시-4	유형	국비	민간부담금	민간-현금
주관	영리-중소기업	1억	25백만원 ↑	2.5백만원 ↑
공동기관1	비영리	2억	(의무없음)	(의무없음)
공동기관2	영리-중소기업(수요기업)	2억	(예외-의무없음)	(예외-의무없음)
합계		5억	25백만원 ↑	2.5백만원 ↑

○ 사업비를 평가나 개선에 필요한 설비구축 등에 사용 가능한지

- ☞ 사업비는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며, 수요기업 양산라인에 실장 등 설비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면 집행이 가능함
- 다만, 과제와의 직접관련성이 있어야 하며, 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”을 준수하여야 함

4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上 제한요건

○ 사업신청시 참여과제의 수 및 참여율

- ☞ 공통운영요령 제20조(사업의 신청)에 근거하여, 신청제한이 있음
 - 3책5공 :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서 총괄책임자는 3개 이내, 참여 연구원은 5개 이내를 동시에 수행 가능(예외사항은 요령 제20조 2항 참조)
 - * 동 사업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최소 20% 이상으로 설정(평가관리지침 근거)
 - 중소·중견기업 :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과제에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과제로, 중견기업은 5개(한계기업은 4개), 중소기업은 3개(한계기업은 2개) 까지 가능(예외사항은 요령 제20조 3항 참조)

○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 여부

- ☞ 기 수행과제와의 중복성은 신청기관이 NTIS(공고문 8p)에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 - 다만, 과제 신청 후, 전담기관(KIAT)에서 과제 중복성을 재확인할 예정이며, 선정평가위원회에서도 추가 검토할 예정임
 - 기 수행과제와의 과제명 등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, 선정평가지 과제수행 방식, 목표, 내용 등에 차별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지원 가능

5 과제 신청시 제출서류(공고문 8p) 中 참여의사 확인서

○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 vs.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

- ☞ 수요기업의 참여 형태에 따라, 3번 서류 또는 4번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- 수요기업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경우(총괄/세부/주관/공동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) : 수요기업의 참여의사 확인서(3번 양식)
 - 수요기업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: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(4번 양식)